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증사업자가 인증 받은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인증 변경 승인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인증사업장 규모를 축소하려는 경우로 명확화하고, 인증사업자명도 변경대상에 포함시키며, 해상 가두리 양식은 잡조 제거를 위해 방오도료를 사용하나, ‘어망방오제 사용 금지’조항이 있어 무항생제 인증을 받을 수 없어 친환경 방오도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도록 하며, 약품에 명시된 휴약기간의 2배의 기간을 「수산물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사용기준」에 따른 휴약기간의 2배의 기간 또는 출하제한기간이 경과한 경우로 법령사항을 반영하는 등 유기수산물 및 무항생제수산물 인증 요건을 실제 수산물 양식 현실에 맞게 완화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8.25 ~ 10.05)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해양수산부령 제 호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규모”를 “규모(축소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인증사업자”를 “인증사업자명, 인증사업자”로 한다.

제34조의2제1호 중 ““무항생제”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을 “무항생제””, ““활성처리제 비사용” 또는 “친환경””으로 한다.

별표 3 제2호바목5) 중 “그 약품에 명시된”을 “「수산물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사용기준」 제3조에 따른”으로, “기간(휴약기간이 불필요한 수산물 동물용의 약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최소 1주일)”을 “기간 또는 출하제한기간”으로 한다.

별표 11 제1호마목5)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1 제1호에 마목가) 및 나)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바목 4) 중 “동 약품에 명시된”을 “「수산물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사용기준」 제3조에 따른”으로, “기간(휴약기간이 불필요한 수산물 동물용의 약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최소 1주일)”을 “기간 또는 출하제한기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가) 및 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소독제를 사용하는 경우
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방오용페인트로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제20조제5항(제34조제4항)”을 “제20조제8항(제34조제4항)”으로 하고, 수수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수수료
제46조 및 별표
13에 따른 수수료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4조(인증 변경승인 등) ① 법 제20조제8항에 따른 인증 변경승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 사업장 <u>규모</u> 2. <u>인증사업자</u> 의 주소 또는 인증 부가조건 ②·③ (생략)	제14조(인증 변경승인 등) ① ----- ----- ----- 1. ----- <u>규모(축소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u> 2. <u>인증사업자명</u> , 인증사업자----- ----- ②·③ (현행과 같음)
제34조의2(친환경 문구표시 및 이와 유사한 표시의 범위)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서 “친환경 문구표시 및 이와 유사한 표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를 말한다. 1. “유기,” “무항생제”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문구(문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한자로 표기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포함된 문자 또는 도형 2. 3. (생략)	제34조의2(친환경 문구표시 및 이와 유사한 표시의 범위) ----- ----- ----- ----- ----- ----- 1. “유기,” “무항생제”, “활성처리제 비사용” 또는 “ <u>친환경</u> ” ----- ----- ----- ----- 2. 3. (현행과 같음)

■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0. 8. 28.>

유기식품의 인증기준(제9조제1항 관련)

2. 유기수산물의 생산자

심사사항	구비요건
바. 동물복지 및 질병관리	1) 양식생물의 질병은 다음과 같은 조치 등을 통하여 예방하여야 하고, 양식생물에 질병이 없으면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예방백신은 사용할 수 있다. 가) 양식 품종과 계통의 적절한 선택 나) 질병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양식장 위생관리 다) 사육환경 개선과 양식밀도 조절 라) 비타민 및 무기물 급여 등을 통한 면역기능 증진 2)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에 따른 수산생물전염병의 발생이 우려되거나 긴급한 방역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필요한 질병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질병에 걸린 양식생물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약초 및 천연물질을 이용한 자연적인 치료요법을 이용하여야 한다. 4)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양식생물에 질병이 발생하거나 치료가 효과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수산생물의 건강과 복지유지를 위하여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의 처방 및 감독에 따라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은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46조에 따른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되, 사용내역 [사용자, 약품명(상표명), 사용량, 사용시간, 사용방법 등]을 기록하고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가 발급하는 처방전과 함께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5)에 따른 출하제한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5)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u>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사용기준</u>」 제3조에 따른 휴약기간의 2배의 기간 또는 출하제한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한하여 판매용으로 출하할 수 있다. 6) (이하생략)

■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1] <개정 2020. 8. 28.>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기준 (제39조제1항 관련)

1. 무항생제수산물의 생산자

심사사항	구 비 요 건
마. 양식관리	1) 수산종자 도입부터 수산물의 출하까지의 모든 양식과정에 대한 명확한 기록유지를 위하여 양식장의 양식시설에 식별번호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무항생제수산물의 식별과 사육이력 확인이 가능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무항생제수산물을 생산하는 양식장에 사육이력 및 병성감정이 되지 않은 수산종자나 관행양식장에서 양식 중인 수산물을 입식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인증품의 채취 및 취급은 위생적이면서 인증품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취급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4) 인증품의 채취, 운송 등을 전후하여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또는 화학약품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양식시설물의 청소 또는 관리를 위하여 소독제나 어망방오제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부착생물의 제거는 건조 또는 고압수를 이용하는 등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소독제를 사용하는 경우 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방오용 페인트로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바. 동물복지 및 질병관리	1) 양식생물의 질병은 다음과 같은 조치 등을 통하여 예방하여야 하고, 양식생물에 질병이 없으면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예방백신은 사용할 수 있다. 가) 양식 품종과 계통의 적절한 선택 나) 질병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한 양식장 위생관리 다) 사육환경 개선과 양식밀도 조절 라) 비타민 및 무기물 급여 등을 통한 면역기능 증진 2)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에 따른 수산생물전염병의 발생이 우려되거나 긴급한 방역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필요

한 질병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3)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질병이 발생하거나 치료가 효과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수산생물의 건강과 복지유지를 위하여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은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46조에 따른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되, 사용내역[사용자, 약품명(상표명), 사용량, 사용시간, 사용방법 등]을 기록하고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가 발급하는 처방전과 함께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4)에 따른 출하제한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 4)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사용기준」 제3조에 따른 휴약기간의 2배의 기간 또는 출하제한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한하여 판매용으로 출하를 할 수 있다.
- 5) 가두리양식장의 경우 일부 가두리에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였으면 그 휴약기간 또는 4)에 따른 출하제한기간의 적용은 전체 가두리를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 6) 수산용 동물의약품을 투약한 수조 또는 가두리 등에는 그 투약사항, 휴약기간 및 출하 제한기간 등을 기록한 표지판을 부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7)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은 안전사용을 위하여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보관함에 별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인증 변경승인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단체명)	인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변경내용 (※ 별지로 작성할 수 있음)	당 초	변 경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8항(제34조제4항) 및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제4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인증기관

귀하

첨부서류	1. 인증서 원본 2.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이유를 적은 서류 1부	수수료 규칙 제46조 및 별표 13에 따른 수수료		
처 리 질 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수, 검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증기관	→ 심 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증기관	→ 변경여부 판정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증기관	→ 지정서 재발급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증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